

# 消 防 法 施 行 規 則 改 定 骨 子

80. 6. 3 소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점검상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소화기구의 설치) 소방대상물별 단 위도에 시행령 별표1의 3항(유증음식점, 음식점)에서 규정한 30㎡ 소방대상물(종전 100㎡)
2. 제28조 4항중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의 바닥면적 50㎡마다 5단 위 이상 소화기 1개이상 비치(종전 100㎡ 이하마다 1개)
3. 제29조(대형소화기의 설치) 3항 및 6항의 200 Kg (종전 100 Kg), 40 Kg (종전 20 Kg) 이상의 가연성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에는 각각 14단 위, 5단 위(종전 8단 위) 이상인 분말소화기를 2개씩 비치
4. 제36조(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기준) 5항(신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5. 제41조(할로겐 화물소화설비에 관한 기준) 1항중 할로겐 화물의 표준방사량을 1분(종전 2분)으로, 등조 2항의 할로겐 화물의 저장량 계산식 변경
6. 제59조(살수헤드의 설치 부분) 제6호(신설) 보일러실 기타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에는 살수헤드 제외
7. 제60조(연결살수설비에 관한 기준) 제1호 (다) .....살수헤드의 수는 2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제62조(표준방사량) (개정) 3종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은 설계된 각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양
9. 제120조(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제9호 단층건물 이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탱크전용실로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이상 70도 미만의 액체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옥내 탱크저장소(종전에는 경유로써 지정수량 이상이었음.)로 개정, 이로 인하여 경유 5,000ℓ 까지 3종소화설비가 완비됨.
10. 제130조(위험물 저장의 예외) 유황의 옥외저장은 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유황의 적치소의 주위에 높이 2m이상의 방화담벽을 설치하고, 석면 등 불연성이 있는 막으로 피복하여야 한다.